

(논단) 북한 자원 개발과 금융 전략 : '해외자원 개발펀드'를 통한 북한 자원 개발 방안

박덕배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요약 >

최근 고유가와 맞물려 세계 주요국들의 무차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 국내 에너지 소비의 35%를 자주 개발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하여 '해외자원 개발펀드'가 최근 도입되었다.

한편 중국과 영국 등은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두고 발 빠르게 북한의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 자원 협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자원 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자원 개발 사업은 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여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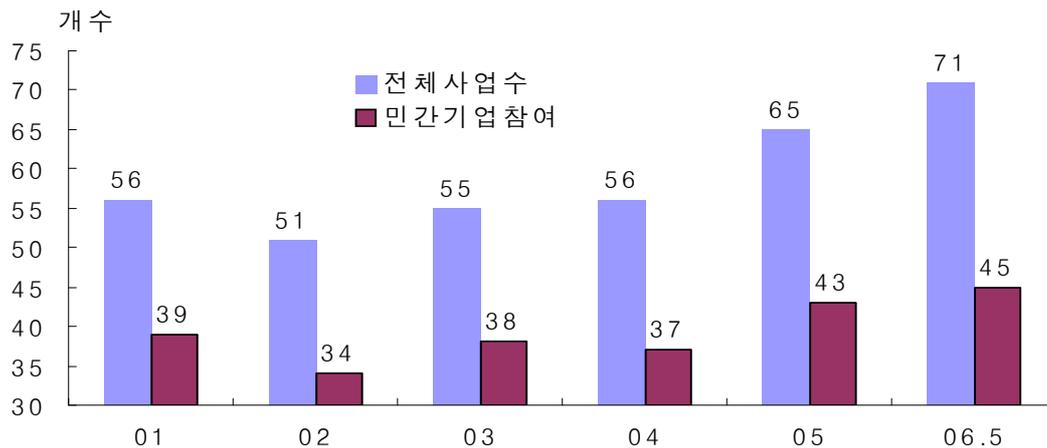
앞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경우 본격적인 북한 자원 개발을 위하여서는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활용이 시급하나 아직까지는 위험이 매우 높다. 소요 자금이 크고, 리스크 분산이 요구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자원 개발펀드'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되 이 펀드가 사업주가 되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참여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가급적 투자 위험을 최대한 축소할 상태에서 통일을 희망하고, 해외자원 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하여 펀드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제도를 강화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도입 배경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석유 수요 급증과 OPEC의 고유가 정책 등으로 유례없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화석 연료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세계 석유소비 2, 3위국인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사할린 등에서 치열한 원자재 확보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원 빈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더불어 석유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세계 5위의 석유 다소비국이다. 국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약 97%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태이나,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기업도 정부 지원 하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6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수는 71건이며, 이중 45건은 민간 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2001년 3.7억 달러에 불과한 국내 기업들의 유전 개발 분야 투자액이 2005년에는 9.5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2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 최근의 국내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수 변화 추이 >



자료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6. 6. 16.

이에 따라 주요 자원의 자주 개발(自主開發) 능력이 제고되고 있다. 국내 원유의 자주 개발률은 2001년 2.0%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5%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2006년 하반기부터는 그간의 물리 탐사 등을 통해 석유가스 발견이 유망한 광구의 탐사 시추가 다수 예정되어 있어 대형 유전·가스전의 발견 가능성도 높다. 현 사업 추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08년 원유 자주 개발률 1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년 11월, 국내의 에너지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비전 2030'에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35%를 자주 개발로 충당한다는 중장기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개발 관련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2013년까지 원유가스 자주 개발 목표 18%(원유 15%, 가스 30%) 달성을 위해서는 총 16조 원(유가 40달러 기준)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의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 수요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아 정부 주도의 자금 지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일례로 정부는 자원 개발 전문 기업 육성에 필요한 10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에너지 자원 사업 특별 회계'에서 소요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2조 원 정도만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해외 자원 개발 관련 금융 지원의 민간화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벗어나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면서 민간의 상업적 경제논리에 따른 금융 지원시스템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즉, 투자 여건과 수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민간 금융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해외자원 개발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특례 규정을 담은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개정 법률안(산업자원위원회)이 2006년 9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참고> 참조). 이에 근거하여 투자자 관심 제고와 향후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펀드 성격의 제 1호 '유전 개발펀드'가 2006년 11월 출시되었다. 이 펀드는 산업자원부가 14.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15-1 광구에 투자하게 되며, 현재 이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6억 배럴, 하루 생산량도 약 6만 배럴에 이르고 있어 비교적 투자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약 2천억 원 규모로 모집되는 이번 펀드는 만기가 5년 3개월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지만 내년 1월초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시켜 일반 주식

1) 위험성이 높은 탐사 사업에는 정부 정책자금(예특회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처럼 매매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하여 2008년까지 투자 금액 3억 원까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고, 수출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자원 개발보험과 파생 상품 거래를 통해 가능한 최대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요국간 각축 예상되는 북한 자원 개발 사업

북한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광물만도 220여 종이나 있고, 매장량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광물도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 7종이나 될 만큼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²⁾ 한반도에는 금·은광을 비롯한 광물 자원의 70% 이상, 철광은 90% 이상이 북한 지역에 편중 매장되어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남한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텅스텐 매장량은 66만 톤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남한에 비해 북한은 광물을 수출 주종 품목으로 자급을 실현하고 있다. 북한 광업은 2003년 기준 북한 국내 총생산의 8.3%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3대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발해(渤海) 해역에는 약 660억 배럴 규모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발해 해역은 북한 남포 앞바다가 있는 서한만까지 뻗어 있어 이곳에도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정보국(EIA)도 서한만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탄화수소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풍부하게 매장된 북한 자원을 두고 중국과 영국 등은 현재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10월 지린(吉林)성의 통화철강그룹, 연변텐츠철강그룹, 중강그룹 3개 기업이 향후 50년간의 무산광산 개발권을 따내는 계약을 북측과 체결하였다. 이들 중국 기업들이 총 매장량 30억 톤, 가채 매장량 13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북아시아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철광 개발을 위해 제시한 투자 금액은 최소 70억 위안(약 9,000억 원)으로

2) 북한은 국가 지하자원에 관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 부존량 또는 생산량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20개 광종의 매장량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 가치는 2006년 기준으로 남한의 약 24배 규모인 2,288조 원어치로 분석하고 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위원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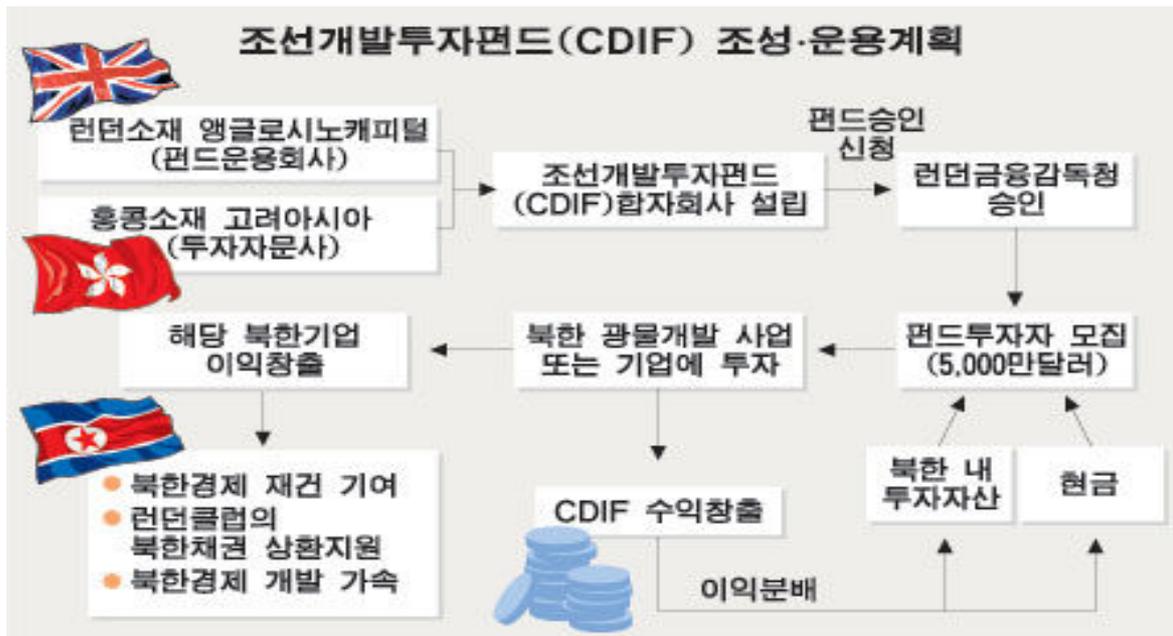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50억 위안은 광산 개발에 투자하고 20억 위안은 지린성 통화에서 무산을 잇는 철도, 도로 등 수송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무산철광에서 매년 1,000만 톤의 철광석을 캐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린성의 풍부한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중국에 동(銅) 광산 채광권을 주는 일종의 바터 거래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하자원을 필요로 하는 지린성과 전력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요구가 맞아 떨어 이루어진 사례로서, 회령 금광, 만포 아연광산 등에서도 유사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천연자원의 채굴 못지않게 중국이 북한의 SOC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한편 영국도 2005년 '조선개발투자펀드(The Chosun Development and Investment Fund)'를 설립하고 영국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허가를 받아 북한의 광물과 에너지, 금융 부문에 투자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영국 런던 소재의 '앵글로-사이노 캐피탈'사와 홍콩 투자자문사 '고려 아시아'가 합자하여 설립한 이 펀드는 1차로 5,000만 달러(500억 원) 규모로 출발해 향후 1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광물 자원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북한 내 외국합작은행을 인수 추진하여 합작은행이 북한 내 펀드 운영과 활동에 핵심요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³⁾ 최근 북핵 문제로 주춤하고는 있지만 높은 수익률 보장 가능성 때문에 한국과 유럽, 미국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수익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앵글로-사이노 캐피탈은 내부 연간 목표 수익률을 15~20%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이미 일부 투자자는 모집되었고 남한 기업 중 북한에 휴지(休止) 중인 자산이 있거나 현금을 출자할 투자자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선개발투자펀드(CDIF) 조성·운용 계획 >

3) 현재 북한과 외국의 합작은행은 조선합영은행(조총련합연 사업추진위원회+조선국제합영총회사 공동출자), 고려상업은행(재미동포와 북한 공동출자), 화려은행(북중 합영은행)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매일경제신문, 2006. 5.30.



자료 : 매일경제신문, 2006. 1. 6.

한편 이들 나라들은 북한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발 빠르게 북한에 접근하고 있다. 2004년 9월 영국 Aminex사는 북한과 모든 영토를 탐사 개발할 수 있는 협정을 맺고, 20년간 채굴 개발권을 부여받았다. 중국은 북한과 2005년 12월에 「해상유전 공동개발 협정」에 서명하였다. 최근 들어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등도 북한 자원 개발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현재 미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때문에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북미간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해외자원 개발펀드’를 통한 북한 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과제

북한 자원 개발의 필요성

한반도내 부존자원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05년 7월 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에서는 '남한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 북한은 지하자원 제공'이란 방식이 제기되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로 인해 추가적인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자원 협력이란 이름으로 남북이 벌이는 대표적인 사업은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의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의 정촌 흑연광산 개발이다. 5) 635만 톤의 흑연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촌 광산은 남북이 50%씩 투자해 개발키로 하였다. 광진공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10만 달러 규모의 현물을 투자했고, 2006년 4/4분기부터 15년간 매년 1,830 톤의 흑연을 들여올 예정이었다. 비록 북한 핵무기 실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으로 현재 연기된 상태이지만,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보아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및 영국 등 해외 자본에 의한 북한 자원 개발은 결국 그 이득이 한반도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자본이 한반도 지하자원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비록 지금까지는 미진하지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북한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의 광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경우 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고 통일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남한은 국내 연료 및 원료광물의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내에 세계적인 광물 자원 수요 설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원료 광물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다. 북한 현지에 자원 개발 기지를 가짐으로써 인건비와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한국내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여 남한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산업구조 조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자원 개발 사업은 개성공업단지에 이어 남한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이 결합함으로써 대표적인 경협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 스스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열악한 투자 환경 등 북한 내부의 사정을 고려할 경우 아직 역부족이다. 따라서 북한 자원 개발을 계기로 남북 경협 활성화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재건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 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 경제 학습 기회 제공, 나아가 향후의 통일 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북한 적용과 과제

북한이 평화적인 태도를 확실히 보일 경우 남북한이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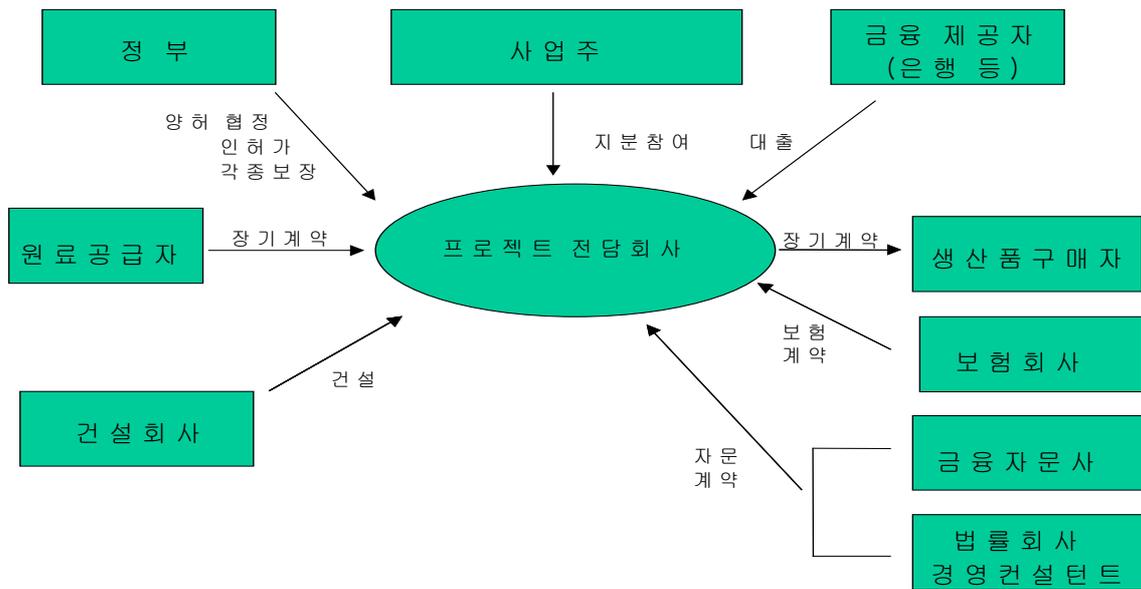
-
- 5) 광진공은 정촌 흑연광산 개발 외에 중국이 개발권을 갖고 있는 덕현 철 광산(추정 매장량 1억 톤)에 100만 달러의 대부투자(융자금 투자로 전체지분의 20%)를 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3년간 14만 4,000 톤의 철광석을 반입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포 대대리 인회석 광산, 단천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 단천 검덕 아연 광산 개발사업 등도 북한과 협상 진행 중이었다.

여, 북한의 기반시설 구축이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북한이 가져가고, 남한이 필요한 자원은 남한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성격상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다. 즉, 성공할 경우 막대한 수익이 가능하나 실패 가능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장기 투자이며, 상환 방법 등도 불투명하다.⁶⁾ 특히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남북간 거래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비상 위험(전쟁몰수 등) 또는 북한 계약자의 신용 위험, 계약불이행 위험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 내 기반시설과 제도의 취약성 등도 투자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에는 대금결제 시스템과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의 특성상 안정형 개발 수익이 크지 않아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모험적이라는 국가기업의 참여도 실패할 경우 국고 낭비라는 비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지원도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이 적합하다. 일반적인 금융 지원 방식은 차입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 위험이 높지 않고, 투자 및 대출 자금 회수가 투명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해외자원 개발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결합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소요 자금이 많고 리스크 분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단행하는 방법이다. 즉, '해외자원 개발펀드'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여 이 펀드가 사업주가 되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

-
- 6) 일반적으로 유전 개발 사업의 경우 탐사 사업의 성공률은 15%이며, 성공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사업을 펼칠 확률이 80%이다. 그나마도 수익이 불확실할 가능성과 장기(5~8년) 사업의 특성상 유가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7) 일반적인 금융 지원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 조달(debt-financing) 방식과 주식 공모(IPO), 증자 등의 주식시장 자금 조달 방식(equity-financing)이 있으나, 이들 방법 모두 확실한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원하기에 무리가 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총칭함

- o 투자 사업의 사실상 소유자인 모기업의 자산 및 부채와 분리된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기초하여 소유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
- o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자는 프로젝트 전담회사에 자금을 출자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인 사업주,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주체인 프로젝트 전담회사, 프로젝트 소요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분
- o 사업주가 부채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非遡求 또는 제한적 遡求금융(non or limited-recourse financing)임
- o 프로젝트의 부채가 사업주가 소유하는 모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簿外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임

앞으로 '해외자원 개발펀드'를 통한 북한 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참여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에는 가급적 투자 위험을 최대한 축소한 상태에서 통일을 희망하고, 해외자원 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하여 펀드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해외동포 포함)과 해외자원 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

이 참여하는 공모 국민펀드 또는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를 설립하여, 이 펀드가 사업주가 되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체가 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자본들도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투자여건과 수익성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펀드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북한과 합의하여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관련 지원 제도를 강화·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자본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각종 투자나 자금조달의 손실을 만회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남북한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협약 등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조기 이행이 중요하다.⁸⁾ 남북한간의 대금결제 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8) 남북한에는 이미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상사 분쟁 해결 절차, 청산 결제 등 4개 합의서가 발효된 상태이나, 실제적 이행은 지연되고 있다.

<참고>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① 투자가별 및 유전별 특성을 고려한 펀드 도입

- ‘해외자원 개발펀드’에는 뮤추얼펀드 형태나 PEF 방식 모두 가능하며, 유전뿐만 아니라 철광석·동 등 일반광물도 투자 가능하며, 해외자원 개발 투자대상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 해외자원 개발펀드는 석유·가스 등 유전뿐만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 기본 계획상의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희토류) 등 일반광물 개발 사업에도 투자 가능
- 유전과 일반광 등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해외자원 개발만을 시행하는 회사(법률상 “해외자원 개발전담회사”)에 대한 출자 및 전담 회사의 지분·채권·수익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
- 펀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투자 대상인 석유·광물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 투자를 통한 위험 분산도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자원 개발기업의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M&A) 및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투자(예: 자원 개발과 동반 진출하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도 인정

해외자원 개발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주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o 생산유전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
해외자원 개발 투자전문회사 (PEF : Private Equity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생산유전은 물론 탐사개발유전 및 외 석유기업 M&A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 o 특히, PEF 방식은 석유공사 및 민간 자원 개발전문기업 등이 무한 책임 사원으로 참여하여 펀드를 조성 o 향후 2013년 자주 개발율 18%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16조 원 전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⁹⁾

자료 :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개정 법률을 정리한 것임

9) PEF 방식이란 자금 모집 시기 및 투자 시기가 상이한 해외자원 개발 특성에 적합한 펀드로서 현행 “간접투자 자산 운용법”에는 M&A 목적으로만 허용된 것을 해외자원 개발에 맞도록 확대 적용한 것이다.

② 펀드의 세제 지원과 투자자 보호 기능

-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해야 세제 지원 가능
 -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 2008년까지 3억원 비과세,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2009 ~11년까지 3억원 5%, 3억원 초과분 14% 분리 과세
 - 현행 펀드 등록세의 50% 감면
 - 탐사 광구의 위험(성공확률 : 전 세계 평균 15%)을 감안, 펀드 출자금의 30%를 탐사 광구에 투자할 경우에도 해외자원 개발펀드로 인정
 - 한편, 나머지 펀드 출자금은 증권·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자원 개발펀드'가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토록 하였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자위험 보증기관에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외자원 개발 사업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규모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
 - 보증 수수료 및 손실 보상 규모는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일반 투자자들 대상의 "공모형 해외자원 개발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위험보증사업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

③ 기타 시중의 일반 펀드와 다른 특례조항

- 일반 펀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나,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사업 투자의 특성을 감안, '해외자원 개발 펀드'는 30% 이내에서 차입을 허용
 - 해외자원 개발 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공불 용자" 등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명문화¹⁰⁾
 - 투자 회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해외 자원 펀드의 존립기간을 20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10) 성공불 용자방식이란 투자 성공시 용자 원리금을 초과 상환하게 하고, 실패하면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임

④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특례 조항

- '해외자원 개발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용이한 설립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30억 원("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 자산 운용사 설립 요건 : 100억원)으로 대폭 낮춤
-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토록 함
- 또한,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성 편차가 매우 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자산 운용사가 성과 보수를 취득할 수 있음¹¹⁾

- 한편 정부도 최근 조성된 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참여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자원 개발 가용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제도 정비 및 재원 확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석유공사 개발부문의 역량을 제고하여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탐사 '성공불 용자' 규모를 확대 계획
- 또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신고 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대한 정부 재원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
- 아울러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자원 개발 비전문 공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이 주 업무가 아닌 산하 기관, 공기업의 경우 소관 중앙부처장 등의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

11) 현행 간접투자 자산운용업에는 일반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성과 보수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